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안)

-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 종합감사 -

2025. 9.

교육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안)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 요구 사항	5
(1) 학교법인 회계 운영 부적정 등(징계·기관경고·통보(인사자료)) ..	6
(2) 이사회 회의 운영 부적정(기관주의·경고·통보)	16
(3)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주의)	19
(4) 겸직 미허가 부적정(경고·주의·통보)	22
(5) 겸임교원 임용 부적정(경고·통보)	26
(6) 범죄사실통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경고·통보(인사자료))	30
(7) 교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미조회(주의·통보(인사자료))	33
(8) 기록물 폐기 부적정(기관경고·통보)	36

(9) ●●캠퍼스 신축이전사업 추진 부적정 (징계·경고·기관경고·시정·통보(인사자료))	40
(10) 청소 및 경비업체 선정 부적정(징계·기관경고·통보(인사자료))	51
(11) 가족(배우자) 수당 수령 부적정(경고·시정)	58
(12) 과태료 납부 부적정(기관주의)	60
(13) 자문료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주의·시정·통보(인사자료))	64
(14)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시정·통보(인사자료))	67
(15) 예산집행 계정과목 미준수(기관경고)	70
(16) 장학금 지급 부적정(경고·통보(인사자료))	73
(17)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기관경고·주의)	76
(1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일시중단 등 미신고(기관주의)	79
(19)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경고·주의·통보(인사자료))	81
(20) 공사 입찰 참가자격 중복 제한 부적정(경고·통보·통보(인사자료))	86
(21)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주의·통보·통보(인사자료))	90
IV. 현시조치 사항	9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는 부내 사립대학 정책 부서 대상 감사 수요 조사 결과 및 그간 감사 이력 등을 토대로 종합감사 대상교로 선정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수원여자대학교의 예산·회계, 연구비, 계약, 기자재 관리, 국가 재정사업 집행·관리 및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 3월 ~ 2024. 4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부서의 점검 결과, 주요 언론보도·민원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24. 4. 22.부터 5. 3.까지 10일간 감사 인력 12명(시민감사관, 회계사 등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2024. 5. 3.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 회의를 하고, 2025. 1. 17.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9. 5.(1차), 2025. 9. 11.(2차) 감사 처분 심의회 의결로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주요 연혁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1983. 2월 설립을 인가받은 이후, 2023. 2월 A 이사장이 취임 하였다. 또한, 대학은 1983. 3월 설립을 인가받은 이후 2021. 2월 제22대 B 총장이 취임하였다.

2. 법인 현황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이번 감사 대상인 수원여자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이사 8명, 감사 2명 등 법인 임원 10명을 두고 있다.

[표 1]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성 별	임 기	전·현직(주요경력)
이사장	A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감 사	-	-	-	
감 사	-	-	-	

3. 재정 현황²⁾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예산(법인회계)은 2021회계연도 △386,850천원에서 2023회계연도 △147,890천원으로 237,960천원(61.7%) 증가하였고, 수원여자대학교의 예산(교비회계)은 2021회계연도 56,837,429천원에서 2023회계연도 47,727,209천원으로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대학알리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재정현황의 '예산'항목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임

9,110,220천원 감소(△16.0%)하였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은 2021회계연도 2,254,000천원에서 2023회계연도 6,064,916천원으로 3,810,916천원 증가(169.1%)하였다.

[표 2] 학교법인 등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법인회계	△386,850	△352,661	△197,890	△442,560	△147,890
교비회계	56,837,429	54,562,757	52,291,800	51,412,088	47,727,209
산단회계	2,254,000	1,948,495	2,518,000	5,382,762	6,064,916

4. 전임교원 확보 현황

수원여자대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생 정원 대비 34.38명이고, 재학생 대비 32.77명이며, 전임교원은 학생 정원 대비 60.32%, 재학생 대비 63.33%를 확보하고 있다.

[표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전임교원 확보 현황

(2022. 10. 기준)

구 분	학생수(명)	전임교원현황(명)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명)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	3,919	114	34.38	60.32
재 학생	3,736		32.77	63.33

5. 시설확보 현황

수원여자대학교는 입학정원 기준(81,855㎡) 대비 69.6%의 교지를 확보(56,969㎡)하고 있고, 교사는 입학정원 기준(46,720㎡) 대비 115.1%를 확보(53,761㎡)하고 있다.

[표 4] 교육시설(교지·교사) 확보 현황

(2022. 10. 입학정원 기준)

구 분	기 준	보 유	확보율(%)
교지(㎡)	81,855	56,969	69.6
교사(㎡)	46,720	53,761	115.1

Ⅲ. 감사결과(안)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기관명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학교법인 수원인제 학원	-	2 (1)	1 (1)		3 (2)	· 기관경고 1 · 기관주의 1 · 통 보 1 【합계 3건】	-
수원여자 대학교	-	3 (2)	23 (8)	25 (8)	51 (15)	· 기관경고 5 · 기관주의 2 · 시 정 2 · 통 보 6 【합계 15건】	· 회수 2,800천원 【합계 2건】
합 계	-	5 (3)	24 (9)	25 (8)	54 (17)	· 기관경고 6 · 기관주의 3 · 시 정 2 · 통 보 7 【합계 18건】	· 회수 2,800천원 【합계 2건】
교육부 등 <별도조치>	-	-	-	-	-	· 통 보 4 · 수사의뢰 1 【합계 5건】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 퇴직자에 대한 통보(인사자료)는 총괄표의 신분상 조치에서 제외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재정 운용 책무성 제고
 - ●●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이 예산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중단되었으나, 조성 부지를 그대로 방치
 - 청소 및 경비업체를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로 선정하고도, 추후 계약금을 증액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
- 법인회계 운영 부적정
 -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금 차입 및 운용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등에게
●●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
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2. 처분 요구 사항 : 21건[붙임 참조]

붙임

처분 요구 사항(21건)

교 육 부

징계·기관경고·통보(인사자료)

제 목 학교법인 회계 운영 부적정 등

소관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법인회계를 예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당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43조(재산의 관리자)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고,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기능) 제1항 및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 차입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있으나 일시 차입은 그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 금액,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이고, ‘장기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이며, ‘기타예수금’은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연금·의료보험(일반 예수금), 갑근세 원천징수액 등(각종세금 예수금), 특별회계 예수금을 제외한 그 밖의 일시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및 제15조(회계원칙)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32조(지출의 원칙) 제1항, 제54조(각종 서식)에 따르면 법인의 수입기관·지출 명령기관은 법인의 이사장으로 하고,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2021~2024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 사항(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학기관의 지출은 반드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 명령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집행의 절차는 ‘집행 품의 및 결재 → 지출원인행위 → 지급명령 →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기능)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2~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 창출을 통해 설치·경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22~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 창출을 통해 설치·경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모든 자금을 수입 및 지출예산에 반영하여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재산의 처분·자금의 차입 등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법인회계 운영 및 차입금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수익을 전액 법인회계 계좌로 이체한 후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별표1】 “법인회계 계좌를 통하지 않은 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같이 2021. 7.부터 2023. 9.까지 총 3회에 걸쳐 정기예금이자 수입금액이 소송비용 등으로 집행되고 잔액만 법인회계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장부에는 수입금과 집행액 전체를 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자금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2023. 6. 26. 이사장이 본인 자비로 ‘◆◆ 변호사 수수료’ 13,310,000원을 직접 지급(계좌입금) 하고서도, 법인회계 계좌에서 입·출금한 것처럼 ‘기타예수금’ 계정 수입으로 처리하고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 및 수입과 지출 절차를 위반하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별표2】 “이사장(A)이 법인계좌로 입금(기타예수금 처리)한 내역”과 같이

2020. 8.부터 2024. 2.까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재원, 상환방법, 상환계획 관련 검토는 물론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37차례에 걸쳐 총 1,068,980,170원을 법인 이사장 A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해당하는 계정과목인 '단기(장기)차입금' 계정이 아닌 '기타예수금' 계정으로 세입처리한 후 법인세, 소송비 등 법인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별표3】 “수입·지출결의 없는 법인 자금 수입·지출 내역” 과 같이 2021. 3.부터 2024. 4.까지 법인회계 수입 및 지출 총 448건에 대해 사전 품의 및 수입·지출결의 관련 서면 결재 없이 이사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이사장 직인을 찍어 문서만 보관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법인회계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및 토지)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표】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임의 집행 내역”과 같이 2021. 1.부터 2023. 5.까지 4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합계 471,432,768원을 ○○ 캠퍼스 공사대금 지급 등 강제 집행을 이유로 임의 집행(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교육부 허가 미이행)하고 2024. 2.27. 이사장 개인자산을 차입하여 이를 보전(【별표2】 37번 참조)하였으며,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1필지(3,187㎡, 지목: 답)를 미상일부터 2024. 5. 감사일 현재 까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 2023. 8. 30. '2023학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2021. 1.부터 2023. 5.까지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된 수익용기본재산(예금) 471,432,768원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변동사항'을 사후 의결하였음

【표】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임의 집행 내역

※ 생략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법인 담당자의 업무 공백, 회계처리 미숙과 잦은 교체, 회계처리 시스템인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 지연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2025회계년도부터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법인에 입금된 자금들은 이사장이 사실상 출연을 목적으로 한 자금이었다고 설명하면서 1,068,980,170원을 모두 출연자금으로 전환함을 2024학년도 제7차 이사회(2025. 1.15.)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설립자 기본금으로 자산을 증액(2025. 3.14. 등기 완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집행은 ○○ 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에서 강제추심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후 의결 및 교육부 처분 신청 절차(2023.10.26.)를 진행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내에 감소 금액을 복구하였다고 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에 대해서는 2025. 1. 20.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집행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나. 검토결과

학교법인의 의견대로 이사장 개인이 출연하여 기타예수금으로 관리하던 차입 자금을 출연자금으로 전환하여 회계 과목 오류를 시정하고 자산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통하여

예·결산 및 회계 처리를 엄격히 규율하면서 사학기관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회계 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5. 징계양정 요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 회계 운영 및 차입금 관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을 임의 집행한 ○국 G, H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 및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80조(징계 및 재심 청구)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에 해당하며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인사복무규정」 제18조(복무상 의무)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정관과 제반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은

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 회계 운영 및 차입금 관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였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을 임의 집행한 ○국 G, H에게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②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 차입금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유기계약직 6급 L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1】

법인회계 계좌를 통하지 않은 자금 수입·지출 내역

※ 생 략

【별표2】

이사장(A)이 법인계좌로 입금(기타예수금 처리)한 내역

※ 생 략

【별표3】

수입·지출결의 없는 법인자금 수입·지출 내역

※ 생 략

교 육 부

기관주의·경고·통보

제 목 이사회 회의 운영 부적정

소관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에 따라 법인 및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7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항 및 제2항,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임원의 직무)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는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등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28조(이사회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2022. 4. 14.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이사정수 8명(당시 재적이사는 6명임) 중 과반수에 미달된 4명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 후 이사 4명의 찬성만으로 '법인 임원 선임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정관상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 ① 법인 임원 등 선임(안), ② 학과 구조조정(안), ③ 대학 행정조직 개편(안), ④ 대학 제규정 개정(안), ⑤ 학교기업(식품분석연구센터) 차량운반구 매각 처리(안)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동 이사회 개최전에 5명의 참석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5명의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오인한 채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이사장이 미국에서 국제화상회의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법인 임원 등 선임(안)'은 BC 감사의 선임(유임, 2021.1.29.~2023.1.28.)과 관련하여 기존에 의결(2020년 제8차 이사회, 2021.1.15.)받은 사항이나,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다시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하였다.

나. 검토결과

감사 기간 이사회 회의 운영과 관련한 다른 지적사항이 없고, 회의 당일 까지 참석 예정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였으나 갑작스런 BD 이사의 불참을 인지 하지 못한 관계자들의 착오로 인해 이사회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허위'가 아닌 '착오'로 인한 사안이라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성립 되지 않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그대로 진행한 학교법인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②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 회의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전 ○국 G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③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안건 중 '법인 임원 등 선임(안)'을 제외한 4개 안건에 대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주의

제 목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사립학교법」 등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 또한,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제2항이 준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에는 성범죄 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겸임교원 임용 시 준용되는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 제6의4)

조항	내용
제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제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교원의 근무 형태(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 신규 임용 시에는 임용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현황”과 같이 202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겸임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겸임교원 174명(객원교수 2명 포함)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고, 이 중 3명(객원교수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이와 같은 미조회 사례가 발생한 원인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제2호나목의 해석을 강사에 국한하여 해석하여,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 등에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처장 U, ▽팀장 V, ▽팀 주임 W 3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현황

※ 생 략

교 육 부

경고·주의·통보

제 목 겸직 미허가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과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및 수원여자대학교가 제정한 하위 규정·지침 등을 준수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외부 겸직) 및 「교원복무규정」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7조(겸직허가)에 따르면, 교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원 10명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별표 1] “겸직 미허가 현황”과 같이 다른 기관의 직을 겸직하거나 타 대학에 강사 또는 겸임 교수로 출강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교원 2명은 겸직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표 2] “사후 겸직 허가 현황”과 같이 5개 기관의 직을 겸직하던 중인 2022. 3. 6.에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교직원 겸직허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겸직 미허가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업무 개선하여 겸직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타 기관 출강 등 겸직을 한 조교수 AL 외 교원 11명에게 ‘경고,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주의)

② 향후 소속 교원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부가 배포한 ‘겸직허가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검직 미허가 현황

※ 생 략

【별표 2】

사후 검직 허가 현황

※ 생 략

교 육 부

경고·통보

제 목 겸임교원 임용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원 임용에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처 ◁팀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83조(하부조직) 및 「수원여자대학교 업무분장 규정」 제3조(▽처) 제2항에 따라 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등교육법」 제14조(강사), 제17조(겸임교원 등) 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1항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에 따라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과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제1호에 따른 [별표1]에 의하면, 교원 및 강사는 적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내지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참고]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별표 1)

(단위: 년)

연구·교육 직명	학력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 실적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 실적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 ▽처 ◁팀과 겸임교원 임용을 위한 자격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법령 및 공고문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준수하여 겸임교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자격 미달 겸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7과 등 4개 학과에서 겸임교원을 채용하면서 공고상 자격요건인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BE 등 4명을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자격 심사 결과 적격으로 심사하여 겸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지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채용심사 절차를 진행한 오류에 대해서는 다른 고의적 의도가 없었으며,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과정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감사 결과를 계기로 심사표에 따른 점수 책정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동종 사안의 방지 노력에 대한 수원여자대학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을 선발한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겸임교원 임용 자격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ㄱ과 부교수 AM, AN, ㄴ과 부교수 AO, ㄷ과 부교수 AP, ㄹ과 조교수 AQ, AR, ㅁ과 부교수 AS, 조교수 AT 등 8명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② 또한, 겸임교원 임용업무를 담당한 ㅎ처장 U, ㅏ팀장 V, ㅑ팀 주임 W 3명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③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격미달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자격 미달 겸임교원 임용 현황

※ 생 략

교 육 부

경고·통보(인사자료)

제 목 범죄사실통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처 △팀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83조(하부조직) 및 「수원여자대학교 직제규정」 제8조(□처) 제2항 및 「수원여자대학교 업무분장 규정」 제5조(□처) 제2항에 따라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및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53조(징계)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등이 통보된 경우, 교원 임용권자인 이사장 및 소관 부서는 징계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관할 위원회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2024. 2.14.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비과 소속 부 교수 AH의 피의사실(명예훼손) 및 구약식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범죄 사실 통보 교원에 대한 징계처리 현황

※ 생 략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범죄사실 통보된 교원에 대하여 사건의 내용이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며, 검찰청에서 보낸 범죄사실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 개인 사생활 성격이 너무 강하여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며, 감사기간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1차 : 2024. 6., 2차 : 2024. 8.) 하여 징계의결(불문경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검토결과

수원여자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및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라 범죄사실 등이 통보된 경우, 교원 임용권자인 이사장 및

소관 부서는 징계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관할 위원회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야 하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시키려 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및 자체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Y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전 □처장 I, 유기계약직 6급 L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교 육 부

주의·통보(인사자료)

제 목 교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 미조회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원의 징계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처 △팀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83조(하부조직) 및 「수원여자대학교 직제규정」 제8조(□처) 및 「수원여자대학교 업무분장 규정」 제5조(□처) 제2항에 따라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 사유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하고,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원면직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부 등에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관할청의 안내 또한 계속되었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의원면직(원에 의한 중도 퇴직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포함)을 하고자 하는 교원의 면직 제한 사유를 관할청인 교육부 등에 조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 △팀은 의원면직자에 대한 면직 제한 사유를 관계 기관에 조회하면서 【별표】 “의원면직 희망 교원 제한 사유 미조회 현황 (2021.3~현재)”과 같이 ㄴ과 前 교수 AZ 등 의원면직 희망자 11명(명예퇴직 5명 포함)에 대해서 소재지 관할 경찰청에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고 관할청인 교육부, 검찰청, 감사원에는 전혀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ㄷ과 前 조교수 BA과 ㄷ과 前 조교수 BB 등 2명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에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일체를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의원면직 제한사유 조회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일부 기관에 미조회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개선하여 의원면직 제한사유 조회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구 ▷팀장 X, 전 △팀장 G, H, △팀장 Y, 팀원 Z 등 5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前 □처장 J, K, I, 유기계약직 6급 L 4명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의원면직 희망 교원 제한 사유 미조회 현황(2021.3~현재)

※ 생 략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기록물 폐기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기록물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처 △팀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83조(하부조직) 및 「수원여자대학교 직제규정」 제8조(□처) 제2항 및 「수원여자대학교 업무분장 규정」 제5조(□처) 제2항에 따라 문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의 폐기는 △팀이 생산부서에 의견조회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연도별 기록물 폐기 현황”과 같이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의 폐기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 총 2,773권(‘22~’23학년도)을 해당 부서 의견조회만 실시한 후 기록물을 폐기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를 반영하여 문서관리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직원을 위촉 및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기록물 업무를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결과

학교 측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부와 국가기록원 등 관할청이 지속적으로 기록물관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안내한 바 있고, 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통해 기록물 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조차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한 것은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앞으로 기록물 폐기 시 관련 심사 및 심의를 거쳐 폐기하는 등 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기록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연도별 기록물 폐기 현황

※ 생략

교 육 부

징계·경고·기관경고·시정·통보(인사자료)

제 목 ○●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2015. 6. 8. ○● 군과 MOU(당시 총장 BF¹⁾) 체결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표1]과 같이 2017. 1. 18.자로 교육부로부터 수원여자대학교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이하 '캠퍼스 이전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2018. 1월 말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표1] 수원여자대학교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 승인 통보(교육부 승인 (2017.1.18.))

1. 승인사항

가. 이전 위치 : ○○도 ○●군 ○●읍 약수리 208-2번지 일원

나. 이전 대상 : 약용식물과 정원 40명(편제80명, 2년제)

※ 총 33개 학과중 1개과 이전(입학정원 1,687명 중 40명, 2.4%), 2023년 2개과, 2025년 2개과 추가 이전 계획

다. 이전 시기 : 2018년 3월 1일

2. 승인조건

가. 교지 20,380㎡이상, 타인 소유 토지를 법인명의 등기, 지목을 학교용으로 변경

나. 교사 6,464㎡이상 확보, 위치변경 인가 승인 전까지 학교법인 등기 완료

다. 자금 조달 시 전체 소요금 중 **74억 초과 금액은 반드시 법인(설립자) 부담**

라~바. 내용 생략

1) BF : 유아교육과 교수, 총장임기 : 2014.11.21.~2016.8.30. 현재 퇴직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자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43조(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장이 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7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 통보(교육부 전문대정책과410, 2017.1.18.) 에 따르면 상기 [표1]과 같은 승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이행하거나 위치변경 계획 승인신청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치변경계획 승인 취소는 물론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캠퍼스 이전 사업은 전 총장 B(설립자 장남)의 지시로 ○○ 군 소재 2012년 ○○학원(18. 폐교된 ○○대 소속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F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BF가 2015. 6. 8. ○○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를 ○○ 군과 체결한 후, 2015. 8.20. '2015년도 ○○ 캠퍼스 추진계획 관련 공청회'2)를 거쳐 [표2]와 같이 2015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 캠퍼스 이전'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교육부는 [표1]과 같이 2017. 1. 18. 그 계획을 승인하였다.

[표2] 2015학년도 제7차 이사회

※ 생 략

B3)는 총장 재임 시 캠퍼스 이전 사업을 직접 추진4)하고자 하였으나, 2015. 6월경 자신의 비리5)가 밝혀져 구속됨에 따라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관련 사업이 지속 되도록 자신의 지인이었던 D이 총장으로 취임 이후('16.8.31.), 이를 통해 캠퍼스 이전 사업을 계속 진행한 사실이 있다.6)

2) '15.8.20. 공청회 상 추진 목적인 대학발전(입학자원 감소, 대학 특성화 추진)-국가발전(창의 융합인재 양성)-지역발전(균형발전) 측면으로 추진한다는 세부추진계획이 없음/ 주관자 : ◇처장 AA
3) B : 총장 2012.1.19.~2013.3.15. / 기초실장 : 1994.~2012.1.17.
4) 건립목적 : 학습 및 단체활동 시설, 교직원 복지시설, 지역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수련원→연수원→캠퍼스 이전으로 목적 변경)
5) B는 총장으로 재직 시 수원여대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AY(B의 지인)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주)○○'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2012. 5부터 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하여, 횡령 혐의로 2015. 6. 유죄 판결을 받아 총장 직에서 해임

2017년 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시 학교법인(이사장 A)과 전 총장(B) 및 공사비 일체를 교비로 집행하던 전 총장(D)간 갈등으로 동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여7) [표3]와 같이 교육부가 승인한 '1단계 캠퍼스조성 자금조달 계획'상 소요 총금액 10,750백만 원 중, 학교법인(B)이 부담하기로 한 확약액 3,351백만 원을 출연하지 않았고, 학교는 동 출연 확약금이 교비로 들어오지 않아 당초 부담하기로 한 7,399백만 원외 지급이 가능한 자금이 없어 업체(주)가 청구한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표3] 1단계 캠퍼스조성 자금조달 계획[교육부 승인 요청서 상(팀-2016-0034('16.8.26)]

(단위: 백만원)

순	주요항목	소요비용	조달재원	비고
1	건축비	6,022	○ 교비 : 7,399 ○ 법인 : 3,351 ----- ○ 건축비 74억 ○ 냉난방, 집기 33억	○ 교비: 적립이월금 ○ 법인: B 출연 약정서 작성 ('16.8.25.) 캠퍼스 이전사업 총 재원 10,750백만원 중 법인부담 약속(B) 3,351백만원이 출연되지 못해 사업 중단
2	구조물안전보강공사	450		
3	진입도로, 조경 공사	927		
4	냉난방 등 비품	3,351		
계		10,750		

그 결과 업체는 2018. 1월 말 기준으로 건축 중에 있던 교사(校舍)동을 공사 공정률 92.1% 상태로 중단하였고, 교육부 담당부서는 2019. 6. 7.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승인을 취소8)하였다.

이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4. 4. 감사일 현재까지 군 산속(도 군 읍 일원)에 해당 건축 중인 교사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업체는 2018. 3. 15. 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9.대법원의 최종 판결(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로 미수금 공사비 1,580백만 원을 청구하였고, 학교 측은 2020. 4. 10. 교비로 동 금액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학교법인 이사장은 현재 총장 A였다.9)

6) 학교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총장 D(30년 지기 친구)과 시설처장 E(D의 영입)은 동 공사비 집행 관련자이고, 이사장 F(B가 영입)은 군과 MOU체결 주관함

7)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집행 등 관련해 리베이트를 서로가 챙기려다 전 총장(B)과 당시 총장(D)간 갈등 발생하였고 이에, A 이사장은 두 명 모두에게 비리가 있다고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비리를 밝히지 못함

8) 취소사유 : 계교 예정 시기('18.9월) 도과, 이전 부지 소유권 미확보, 법인부담금(33.5억) 미부담 등 승인 조건 미이행

그런데, 학교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표3]과 같은 당초 교육부 승인 사항과 달리 교비를 초과 집행하였는데, 이때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교육부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21. 11. 1. ~ 11. 4.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 점검에서 지적되고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이제 와서 초과 집행액 1,580백만 원 중 100백만 원을 2025. 8. 현재 법인에서 교비로 세입 하였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분할 세입¹⁰⁾할 계획을 제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 측이 캠퍼스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캠퍼스 이전 필요성 등에 대한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구하고, 이전 지역에 필요한 교육용 시설·설비와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는 등 충분한 검토로 교비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검토 및 논의 절차 없이 전 총장(B)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처리함에 따라 막대한 교비가 손실되었다. 또한, 후속 조치도 미진하여 대안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개선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측은 캠퍼스 이전 추진 중에 발생한 공사업체 선정 및 변경,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별첨1]과 같은 여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교육부 실지 감사 기간(‘24.4.22.~5.3.) 중 캠퍼스 이전 사유와 관련자(B, D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측은 ‘당시 관련자들이 이미 퇴직한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는 입장만 피력하였다.

상기한 사실 관계와 학교 측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교비가 손실되었고, 후속 조치 미흡으로 학교의 교비는 계속 손해가 발생 중이다. 이에, 동 건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동 관련, 학교 측은 업체의 채권 청구 원인이 2017.12.20.~2018.1.15.기간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것이라 당초 공사금 청구 시점에는 A가 이사장 직위에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음.(동 초과집행금 관련하여 A의 책임(관여)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임)

10) 이행계획: (이행완료)‘23.~’24. 각 50,000천 원, (이행중)‘25. 480,748천 원 및 ‘26.~’27. 각 500,000천만 원, 총 1,580,748천 원

가. 캠퍼스 이전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토 미흡

학교 측은 [표3]과 같이 10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 캠퍼스 이전 사업에 대해, 캠퍼스 이전 추진 개요 및 사유 등 단순하고 추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2015학년도 제7차 이사회(2015.11.3.)' 및 '2015년도 ㉠㉠ 캠퍼스 추진계획 관련 공청회(2015.8.20.)'를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캠퍼스 이전 부지가 오지(奧地)라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① 부지 선택의 적절성 여부, ② 학생 모집 어려움 여부, ③ 교직원 확보 어려움 여부, ④ 캠퍼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확보 방안(인건비, 주거·생활비) 여부, ⑤ 신설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나.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새로운 지역에 캠퍼스가 설립되면 점진적으로 기존 학과를 이전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론화 과정 및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실시한 의견 수렴은 2015. 8. 20. 개최한 '2015학년도 ㉠㉠ 캠퍼스 추진계획 공청회' 1회만 있고, 동 공청회도 캠퍼스 이전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이전 추진을 확정된 후 향후 계획을 설명한 자리였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는 참석자(교원전체)의 서명만 있을 뿐, ㉠㉠ 캠퍼스 이전의 적절성 등 관련 의견 수렴이나 토의 자료는 없다.

따라서, 학교 측이 손실한 교비 원금은 최소 89.8억 원¹¹⁾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방안과 동 사업과 관련한 향후 비용 발생(소송비, 미지급 공사비, 방치 건물 유지비) 대책 및 동 사업 추진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 89.8억 원은 교육부 승인액 교비 74억 원과, 미승인액 15.8억 원을 합쳐서 2018.1말까지 공사비로 사용한 총금액 <상세 별첨>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학교 측은 2024. 5. 3. 1차로 동 사업 추진 자금 부족, 학생 모집 어려움, 재정 적자 누적, 구성원 반대 등의 사유로 동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5. 1. 3. 2차로 미준공 건물을 매각해 교비에 세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감사 당시 총장(C)은 책임자 및 교비 손실에 대한 조치계획에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 (전 총장 C) ●● 캠퍼스 일부 이전은 그 당시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관련자 조치는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대학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교비 손실액도 대학이 이들에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 교육부가 책임자를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를 처분하면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 아울러, 동 사업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안이고, 대학·●●군·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 사업으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전 이사장, 현 총장 A) 2015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 안건에 대학이 중장기 계획의 목적으로 심의 요청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것이고, 동 건 심의 시 본인이 불참하여 당시 의사결정에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또한, 공사 비리와 관련한 소송과 관련자(D 등)에 대해 해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② 검토결과

교육부, ●●군, ⅢⅢ청 등이 건물 매각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물 완공 후 활용 방안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아래 [표4]와 같이 이전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 허가(재개 및 매각)가

필요하나 교육부 관련 부서는 부정적 견해이며, 학교도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1차 학교 측 의견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캠퍼스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기에 학교 측이 제시한 ‘미준공 건물을 매각해 교비로 세입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표4] 미준공(방치) 건물 매각에 대한 관련 기관 입장

- **국무총리** : 현 미준공 상태로 매각 불가능(매각 전 동 건물 및 토지에 건설비 미납으로 인한 압류 건 해지)
- **○○○군** : ○○○군 군계획시설에서 교육용 시설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로서 교육 목적 외 용도로 매매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
- **○○○○청** : 사업 부지내 국유림(50% 차지)은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만 대부 가능, 취소될 경우 대부 불가로 원상복구(복구예상액 7.5억 이상) 명령 가능성 높음
- **○○○군민** : 사업 중단으로 토지 활용 관련 다양한 민원 제기 중. 원안대로 사업 추진 희망
- **학 교** : 교육시설로 활용할 매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시점에서는 공사 재개로 **건물 완공 후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 안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함

수원여자대학교는 막대한 교비를 낭비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방치하고 있기에, 동 건 관련자 B 등 총 13명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교비 손실액 89.8억 원에 대한 보전책 마련이 필요하다.

5. 징계양정 요구

A는 ○○○캠퍼스 이전이 본격 추진된 시점인 2015년 및 공사비의 대부분이 집행된 2017년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표3]과 같이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3,351백만 원을 적기에 투자하지 않아 교비 1,580백만 원이 교육부 승인 없이 집행될 시기에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 점검 시 적발될 시점에 역시 이사장 직위에 장기간 있었음에도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구체적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공사 중단 건물은 산속에 방치되고 교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A는 ○○캠퍼스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이사장 및 총장으로서 학교 경영과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권의 직위에 장기간 재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추진한 일이 아니라는 사유로 학교의 막대한 재정 손실 및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미강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교비 89.8억원 낭비 및 보전대책 미강구' 등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물어 「수원여자대학교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 법령, 법인 정관, 기타 본 대학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조항의 징계 사유를 적용하여, '경징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6.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 캠퍼스 이전 공사로 손실된 교비 89.8억 원에 대한 구체적 교비 세입 대책을 마련하되,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완공 후 매각하는 방안은 ○○군 등 관계기관의 긍정적 의견(표4 참조)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 캠퍼스 이전 추진 관련자 중 현 총장 A에 대해 관리자 책임을 물어 “경징계” 이상을, 당시 ◇처장 AA는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11명도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모두 퇴직 및 징계 시효가 도과되어 그 내용을 통보 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경고, 통보(인사자료))

③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기관경고” 하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별첨 1】

●● 캠퍼스 관련 소송 현황

※ 생 략

【별첨 2】

●● 캠퍼스 신축 공사비 집행(교비 손실) 현황

※ 생 략

교 육 부

징계·기관경고·통보(인사자료)

제 목 청소 및 경비업체 선정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수원여자대학교 구매규정」에 따라 2년마다 공개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학내 청소와 경비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 및 제3항 따르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원여자대학교 구매계약 규정」 제15조(경쟁계약 시 낙찰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르면 세출이 되는 경쟁입찰 시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가 공개 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개 입찰 시 제시한 조건(가격 및 기타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비에도 손실이 없도록 처리했어야 한다.

이에 수원여자대학교는 2023. 1.18. 2년간(2023.2~ 2025.1.) 교내 청소 및 경비 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나라장터)에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한 총 120개 업체 중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유효한 44개 업체 중 예정가격¹⁾ 1,230,007,925원 이하 투찰자 중 최저가(낙찰하한율 87.998%)인 1,082,980,000원(예가비율 88,046%)을 제시하고 적격심사²⁾을 통과한 (주)□□을 최종 선정³⁾하였다.

그런데, (주)□□은 업체로 선정된 후인 2023. 1.25.에 입찰 시 제시한 투찰액으로는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움⁴⁾을 이유로 투찰액

1) **예정가격은** G2B(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학교가 공개한 **기초금액**(1,237,000,000원)을 보고 투찰 한 금액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한 금액 (**발주자 및 업체도 알지 못함**)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

2) (주)□□은 86.2으로 적격심사 통과(100만점에 기준 85점 이상):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적격심사 기준) 1.이행실적(10), 2.경영상태(25), 3.입찰가격(60),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최저임금보장 의무 포함)(5)

3) (선정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낙찰하한율 87.995%) : ①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G2B를 통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가로 결정 ②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G2B 추점으로 결정.
(투찰현황) 입찰 참여업체 120개 중 유효 투찰 업체 44개 모두가 낙찰가 1,082,980 000원 금액과 근접(최저 1,083,491,000원~ 최고 1,192,378,000원)한 금액으로 투찰(별표 참조)

4) 학교가 입찰 시 공개한 기초금액(1,237,000,000원)에 인건비가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어 투찰시 최저 임금 미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음(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투찰) 따라서, 잘못된 입찰 공고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기에 단가를 올려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함(기재부 지침에는 ‘시중노동단가’를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공고 대로라면 반영이 불가함)

1,082,980,000원에 149,026,258원의 추가를 요청했고, 학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2023. 2. 9. 최종 1,230,000,000원으로 계약금을 증액 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조달청을 통해 공정한 공개 입찰을 거쳐서 업체를 선발한 것처럼 보이나, 업체를 선정한 후에 동 업체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한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2023년 이전까지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 하면서, 업체가 최저임금을 구조적⁵⁾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기초금액을 설정한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판단(인정)하였고, 재입찰을 할 경우에는 업체 선정이 개강 후어나 결정하게 되어 학내 혼란이 야기될 것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그러나 당시 (주)▣▣이 증액 요청한 문건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측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금액 조정이 곤란할 경우 청소 품질을 저하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학교는 업체의 증액 요청 금액을 그대로 수용 하여 계약함으로써 학교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학교에 불리하게 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5) (업체 주장) 입찰에 공개한 기초금액에 이미 최저임금 단가로 책정되어 있어,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기초금액에는 최저임금 단가가 아닌 조달청 기준(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2)에 따라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6) ▣▣ 제2023-014호(2023.1.25.) 1순위 지명 후 증액 요청한 문서 첨부물 4페이지 상단. 4.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중 ‘나’항목

또한, 학교가 공고한 입찰 공고문7)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응찰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정업체가 동원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최저임금)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학교는 학교의 귀책 사유(공고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기초금액을 설정)로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① 새로운 입찰 진행과 ② 기선정된 (주)□□에 증액한 계약 중 어느 방안으로 추진해야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상기 ①, ② 방안 모두 관련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 [법률자문 주요 내용]**

①번 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을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에 최초 입찰시 정한 입찰가격 등 공고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은 달리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귀 대학교가 설정한 기초금액이 잘못되었음을 근거로 새로 입찰공고를 내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조달교육원 공사계약 유권해석 사례 23면 중 계약제도와-30, '13.01.09.참조)

②번 관련: **대학교의 기초금액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교의 재량에 따라 낙찰금액이 아닌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계약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상기 ② 방안과 관련된 법률 자문은 학교 측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입찰 시 (주)□□이 제출한 서류에 '동원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최저임금)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증액 요청한 문서에도 '학교 측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금액 조정이 곤란할 경우 청소 품질을 저하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장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바, 학교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새로운 입찰을 통해 응찰의 기회 상실), 교육기관이 담보해야 할 공정성·신뢰성과 교비의 절약 등 학교에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당초 업체에서 제안한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한 금액

7) 공고번호 : 2022-용역-11호(2022.1.10.) 전자입찰(G2B) 2023.1.18.15시까지 접수, 제출서류 : 경비업 허가증, 별지서식(1~4호) 등

조정 없이 계약하는 방안 내지 새로운 입찰을 통한 계약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상기한 바와 같이 비용 절감이 가능한 다른 방안의 선택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비용 산정상의 귀책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업체와 불공정한 방식의 계약을 추진하여 교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⁸⁾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업체와 원활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 새로운 입찰 방안을 추진했어야 한다.

5. 징계양정 요구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주)□□이 '학교 재정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구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예산을 절약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검토조치 하지 않아 학교의 재정적 손실을 보게 하였다.

특히 공개 입찰 후 선정된 (주)□□에 계약금(투찰금)을 증액한 행위는 특정 업체에게 재공고 입찰 시 유찰의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추가 증액분을 지급하는 등 합법을 이용한 우회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찰을 했어야 하나, 법적 문제가 없음을 법률 자문을 통해 알고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훼손한 업무 담당자 N 등 4명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8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8) 입찰 참여업체 120개 중 유효 투찰 업체 44개 모두가 낙찰가 1,082,980,000원 금액과 근접(최저 1,083,491,000원~ 최고 1,192,378,000원)한 금액으로 투찰. 따라서, 유효 투찰업체(44개) 모두가 (주)□□이 사후에 학교가 최종 계약한 금액 1,237,000,000원으로 증액한 것을 인지하면 형평성 제기 가능성이 높고, 만약 (주)□□외 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최종 계약금 이하로 조정도 가능해 보임(투찰 현황 상세내역-별첨1 참조)

6.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동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학교에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한 업무 관련자 N, M 등 총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조치하고, 앞으로 용역 계약 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동 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및 기관경고)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동 업무 담당자(N, M)가 추진하는 대로 용인한 전 □처장 I, 전 총장 C 등 2명도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유효 입찰 현황

※ 생 략

교 육 부

경고·시정

제 목 가족(배우자) 수당 수령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제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이 있는 교직원에게 신고된 가족 수당 신청서를 검토해 정한 기준에 따라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교직원은 그 사실을 해당 부서에 알려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원여자대학교 제수당 지급 규정」 제5조(가족수당)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따라 가족(배우자)수당은 월 40,000원을 지급하되, 가족(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이 별지1호 서식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동 신청서가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며, 총장은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 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 비과 교수 AH는 2022. 8. 25. 이혼 판결로 배우자와 부부관계가 아닌데도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2022.9. ~ 2024.4. 감사일 현재까지 월 급여에서 4만 원씩 총 20개월 동안 800,000원을 수령 받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교수 AH는 연말 정산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관련 수당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적 전까지도 자신이 동 수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검토결과

교수 AH가 받은 배우자 수당은 이혼 판결로 이후에는 받아서는 안 될 수당 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신고 절차를 본인이 챙기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에, 잘못 받은 수당은 회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학교 수당 규정을 위반한 교수 AH에게 '경고' 조치하고, 부당하게 받은 배우자 수당 800,000원은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및 시정)

교 육 부

기관주의

제 목 과태료 납부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채용된 교직원(이하 '근로자')에 대해 보험의 취득 및 상실을 관할청에 신고하고, 소속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¹⁾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1) 징수기관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징수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 기간(2024. 4.22. ~ 5. 3.) 중 위 학교의 고용보험 신고 및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과태료 납부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신규 채용한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신고 및 학교 건물에 대한 방화 및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총 8건, 합계 4,562,000원의 과태료를 교비로 집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지적의 대부분은 검임교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이들은 원소속 기관이 있어 원소속 기관에서 동 신고를 완료했다는 전제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대학 재정이 열악하여 동 업무(보험취득 및 상실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휴직하여 업무 경력이 미흡한 대체인력(일시 근무하는 계약직)들이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 10. 26.부터는 업무 분장을 세분화하여 여러 명이 담당함으로써 동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 선처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학교 측 의견대로 원소속이 있는 검임교원에 대한 업무처리 미흡은 이해가 되나, 발생한 과태료 현황에는 ‘일반직원’, ‘조교’, ‘강사’ 등 원소속 기관이 없는 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인력 부족 이유도 전산 개발 또는 일단 先 보험 가입 후 환불 받는 방식²⁾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도, 담당자들의 업무 지연 처리로 관련 과태료가 청구되어 교비가 계속 손실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 주장은 지적을 면책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동 업무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 및 철저한 인수인계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2) 타 대학의 경우, 검임교원이 동 보험 가입이 누락 되는 것을 대비하여 학교에서 先 가입하고 사후에 해당 기관에서 중복 여부가 확인되면 환불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별표】

과태료 납부 현황

※ 생략

교 육 부

주의·시정·통보(인사자료)

제 목 자문료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대학 운영 관련 자문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항목에 한해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한국사학진흥재단, 2023~)”에 따르면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집행은 비등록금회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교비회계에서 자문료 등을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은 비등록금회계에서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자문료 등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21. 6.부터 2022. 2.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자문료 등 합계 46,970천원을 등록금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자문료 등 집행에 대해 「사립대학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등록금회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른 검토 없이 집행한 것으로 해당 지적에 이견이 없으며 이후 2022 회계연도부터는 해당 금액을 비등록금회계에 편성하였으며, 기존 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된 법률, 노무 자문료 등을 원래 집행해야 할 비등록금회계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등록금회계에서 자문료 등을 집행한 전 △팀장 Y(현 △팀), 전 △팀장 G(현 ♣ 센터)에 대해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된 자문료 등 합계 46,970천원을 비등록금회계에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전 □처장 J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자문료 등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

※ 생 략

교 육 부

주의·시정·통보(인사자료)

제 목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 선정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수원여자대학교 포상 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규정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원여자대학교 포상 규정」 제3조(포상대상) 및 제5조(장기근속상 구분 및 포상내용)에 따르면 장기 근속자에 대해 기간별로 10년은 30만원, 20년은 100만원, 30년은 200만원, 40년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본 대학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매 10년 단위로 산정하되, 휴직(단, 육아휴직 제외), 직위해제, 병가 기간(단,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병가는 제외)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장기근속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를 명확히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근속기간 미달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 선정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근속기간 중 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속기간에 포함한 결과 근속기간에 미달한 교원 2명을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금 합계 3,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인사시스템 개편 등의 사유로 인해 과거 휴직기간이 누락되어 근속기간이 미달된 교원 2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2인 중 1인은 이후 계속 근무로 인해 장기근속 기간을 달성하였으며, 장기근속 수당을 수령 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착오 지급된 상금 2,000천원을 환수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근속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포상금을 과다 지급한 전 >팀장 X, G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오지급된 장기근속 상금 2,00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전 □처장 J, K 및 전 유기계약직 6급 L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근속기간 미달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 선정 현황

※ 생 략

교 육 부

기관경고

제 목 예산집행 계정과목 미준수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으로 규정된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의 수입·지출 관련 계정과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 및 제17조(계정과목)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홍보비(4237) 과목은 신문 광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제작 경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신문 광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제작을 위해 홍보비 과목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 8.부터 2024. 2.까지 【별표】 “홍보비 목적 외 집행 현황”과 같이 총 61차례에 걸쳐 회의비, 출장비 등 계정과목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 합계 70,300,880원을 홍보비 과목에서 집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지출 항목별 계정과목 적용 시 예산과목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등 업무상 착오로 해당 지출 항목으로 집행하였고, 앞으로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 예산을 철저히 검토·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향후 예산 집행 시 계정과목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별표】

홍보비 목적 외 집행 현황

※ 생략

교 육 부

경고·통보(인사자료)

제 목 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68조(장학금)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여자대학교 장학규정」 및 「수원여자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원여자대학교 장학규정」 제5조(장학생 선발)에 따르면 각종 장학금을 지급 받을 대상자는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수원여자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장학생 선발)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장학생은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선발하고, 후기졸업자 등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별표】 “수업연한 초과자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8명에게 장학금 합계 13,410,0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장학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장학관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내용을 숙지하며 담당자의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하겠다고 답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팀 일반직 6급 AC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일반직 5급 AD, 유기계약직 6급 AE, 일반직 3급 AF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수업연한 초과자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 생 략

교 육 부

기관경고·주의

제 목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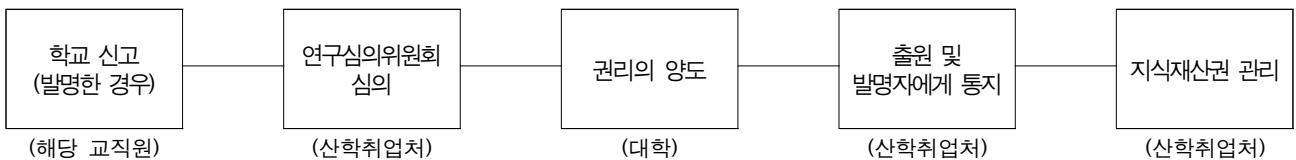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발명진흥법」 및 「수원여자대학교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권을 [표 1]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표 1】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되어 있고,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직무발명 규정」 제4조(발명의 신고)에, 제5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및 제6조(권리의 양도)에 따르면 교·직원이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학취업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취업처장은 신고를 받으면 의견을 첨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대학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은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산학취업처에 신고하여야 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2012년 수원여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지식재산권을 신고 없이 개인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사실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 사과 부교수 AI 등 3명은 [표 2]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현황”과 같이 2013. 3.부터 2021. 4.까지 총 3건의 발명을 산학취업처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다.

【표 2】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현황

※ 생 략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위 3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담당자에게 관련 연수를 이수하게 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신고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관계 변경 처리 등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사과 부교수 AI, 르과 조교수 AR, 르과 부교수 AJ 등 3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 육 부

기관주의

제 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일시중단 미신고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및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4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업무 위탁 등) 제2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 폐지 등의 신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신고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제8조(교육과정 설치) 제3항에 따르면 학점인정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의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신고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 부설 ◆◆은 【별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일시 중단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보육실습’ 등 총 49개 학습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 이후 해당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에게 업무 처리 지도를 받았으며, 2024.5.7. 학습 과정 일시 중단 신고를 접수하였고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 사항에 일시 중단 학습 과정 게재를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교 육 부

경고·주의·통보(인사자료)

제 목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 8. 16. (주)■■■(대표 AW)와 “▲▲공사(공사기간 2021. 8. 16. ~ 2021. 9. 14.)” 계약(계약금액 43,700천원)을 체결하여 2021. 9. 14. 준공처리하는 등 전체 10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2021. 9.부터 2024. 3.까지 준공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 관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원여자대학교 공사관리 규정」 제30조(법정경비의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시설담당부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22.2.)」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대학은 자체점검 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계약한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법정경비')의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과 같이 절차에 따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림] 법정경비 정산 절차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 9. 14. “▲▲공사(공사기간 2021. 8. 16. ~ 2021. 9. 14.)”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경비 1,601천원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감액 조정하지 않는 등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21. 9.부터 2024. 3.까지 총 10건의 시설공사를 준공처리하면서 계약금액에 계상된 법정경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공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 금액보다 34,098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금액이 확정 되면 해당업체에 회수할 예정이며, 향후 시설공사 준공 시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된 법정경비의 사용실적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비용은 감액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처 O, P에게 '경고', 해당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처 M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주의)

② 정산(감액)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법정경비 10건 합계 34,098천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한 6건 합계 28,545천원은 자체점검 후 한국연구재단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전 □처 계약직 Q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

※ 생략

교 육 부

경고·통보·통보(인사자료)

제 목 공사 입찰 참가자격 중복 제한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수원여자대학교 공사관리 규정」 등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금 등으로 집행하는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35조(계약의 원칙) 제1항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수원여자대학교 공사관리 규정」 제4조(준용)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9호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에서 경쟁참가자 자격의 제한사항은

종합공사 30억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인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 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①실적제한을, 종합공사 88억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②소재지의 제한을,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③재무상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함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소재지, 재무상태를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2021. 3. 9. 예정금액 94,000천원의 “▶▶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공사실적은 3년 이내 1.4억원이상, 입찰참가업체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신용평가등급³⁾은 ‘B’이상으로 중복 제한하는 등 [별표]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복 제한 현황”과 같이 2021. 3.부터 2024. 1.까지 전체 15건의 시설공사(계약금액 합계 3,418,321천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명시하면서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사업장 소재지를 중복적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그간에 관행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하였으나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부여한 등급으로 기업 신용평가등급은 D(채무불이행)에서 AAA(최상위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하여 계약 업무를 처리한 ○처 R, O, P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② 앞으로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중복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전 □처 계약직 Q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별표】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복 제한 현황

※ 생 략

교 육 부

주의·통보·통보(인사자료)

제 목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관기관 수원여자대학교

조치기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여자대학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2023. 1. 9. (주)▼▼(대표 AX)와 “◀◀공사(계약금액 759,780천원, 공사기간 2023. 1. 9. ~ 2023. 2. 24.) 계약을 체결하고 2023. 2. 17. 설계변경에 따른 253,520천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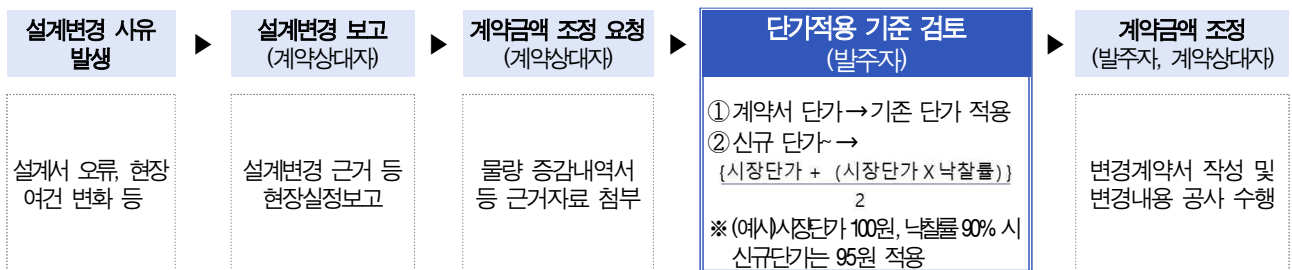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정의서(22.2.)」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학내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원여자대학교 공사관리 규정」 제4조(준용)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의 부속서류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공사량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신규 품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22.2.)」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대학은 자체 점검 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여자대학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기존 계약된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단가는 계약서의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 품목의 단가는 시장단가와 낙찰률을 고려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수원여자대학교는 2023. 1. 9. (주)▼▼(대표 정문영)과 계약한 “◀◀공사 (공사기간 2023. 1. 9.~ 2023. 2. 24.)”의 진행과정에서 공사량이 증가하여 2023. 2. 17. 계약금액을 당초 759,780천원에서 1,013,300천원으로 253,520천원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량이 증가된 품목(페인트 PT-01) 단가를 계약단가(3,090원/㎡) 보다 1,545원 높은 단가(4,635원/㎡)를 적용하는 등 [별표]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현황”과 같이 총 18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처리하면서 16개 품목은 기존 계약단가 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품목 2개의 단가는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공사비 합계 20,752⁴⁾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원여자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사 담당자 1명이 다수의 공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자료의 계약단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교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설계변경
서류를 신중하게 확인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① 시설공사 설계변경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처 M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설계변경 과정에서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20,752천원을 해당업체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고, 해당사업에 대해 자체점검 후 한국연구재단에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통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전 □처 계약직 Q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4) (재료비, 노무비 직접비용) 18,104,138원 +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용) 2,648,697원 = 20,752,000원

【별표】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현황

※ 생 략

□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조직·인사】		
1. 사무직원 정원 관리 및 승진 제도 미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 및 승진제도 미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사립학교법」 제70조의2,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76조 및 제86조의1】</p>	<p>【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p>- 사무직원 정원 및 승진제도를 정관 및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p>
【교비회계】		
2. 공용 차량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차량 운행 시 배차신청서, 운행일지 등 차량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운행비용 합계 138천원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수원여자대학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1조】</p>	<p>【수원여자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p>- 공용 차량 운행 및 관리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p>
3. 출장여비 중복 (초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무기계약직 5급 AG 등 12명이 같은 날 실시한 출장 건에 대해 여비 합계 602,800원 중복 지급 ○ 4시간 이하로 출장을 실시한 ☆팀 4급 AU 등 3명에게 여비 합계 90,000원 초과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p>	<p>【수원여자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p>- 초과 지급된 여비 합계 692,8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4. 교내 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교수 AK가 교내 연구과제(지원액 : 1,800천원, 연구기간 : 2021. 5. 1. ~ 2022. 4. 30.)를 수행하면서 수원여자대학교 지원 과제임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수원여자대학교 연구관리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p>	<p>【수원여자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p>- 규정에 맞는 논문을 제출받기 바람</p>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5.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 교통비 현금 지급 부적정	<p>○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 5명에게 교통비 합계 1,850천원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p>	<p>【수원여자대학교】</p> <p>○ 통보</p> <p>- 규정에 맞는 수단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기 바람</p>
【시설·물품】		
6. 지체상금 미부과 부적정	<p>○ 기자재 납품기한이 짧게는 2일, 길게는 7일이 지났음에도 지체상금 1,150,030원 미부과(3건)</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2호, 「수원여자대학교 구매계약 규정」 제25조】</p>	<p>【수원여자대학교】</p> <p>○ 시정</p> <p>- 미징수한 지체상금 1,150,030원을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